

## 교직원포상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직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포상구분)**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공로상 :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업적이 많은 자 또는 각종행사, 대회에서 본교의 명예를 높인 자.<개정 2007.09.01>
2. 모범상 : 맡은바 직무에 근면·성실하고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.<개정 2007.09.01>
3. 근속포상 : 본교에 근속한 자(다만, 직원의 경우는 법인, 산하학교 경력 포함, 근무기간은 2000년 3월1일부터 기산하되 휴직기간은 제외)<개정 2007.09.01>
  - 가. 20년 근속포상
  - 나. 30년 근속포상
4. 정년(명예)퇴임 포상 : 본교에서 정년(명예)퇴직 한 자
5. 강의 우수교원 포상 : 교원업적평가의 수업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
6. 학술상 포상 : 연구와 저술 및 창작활동 등의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
7. 창안상 : 직무개선이나 새로운 제도도입으로 학사행정발전에 기여한자<신설 2007.09.01>
8. 협조상 : 본교 발전에 적극 협조한 단체 및 개인<신설 2007.09.01>
9. 표창장 : 학생으로 타의 귀감이 된 자<신설 2007.09.01>

**제3조(포상시기)** 포상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술상, 공로상, 모범상, 근속포상 : 개교기념일(다만 정년(명예)퇴직예정자가 근속포상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정년(명예)퇴직일)
2. 정년(명예)퇴임 포상 : 정년(명예)퇴직일
3. 강의 우수교원 포상 : 학년말
4. 수시포상 : 사유발생시

**제4조(포상내용)** 포상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로상 : 표창장과 소정의 포상금
2. 모범상 : 표창장과 소정의 포상금
3. 근속포상 : 표창장(패)과 소정의 포상금
4. 정년(명예)퇴임포상 : 표창장(패)과 소정의 포상금
5. 강의 우수교원 포상 : 표창장과 소정의 포상금
6. 학술상 포상 : 표창장과 소정의 포상금

**제5조(포상대상자 추천)** ① 포상대상자는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교원은 각 학부(과)장 또는 교학지원처장, 직원은 각 부서장 또는 행정지원처장, 학생은 입학홍보처장이 추천한다.<신설 2007.09.01.><개정 2021.07.22.>

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공적조서[별지1호 서식]를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<신설 2007.09.01>

③ 전항에 불구하고 근속상은 인사담당부서에서 추천하며 공적조서를 생략한다.<신설 2007.09.01>

**제6조(포상심의 및 결정)** 포상심의를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, 직원은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 다만, 정례적인 근속포상과 정년(명예)퇴임포상에 대하여는 각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.

**제7조(회의의 소집)** (삭제)

**제8조(포상 결격자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.

1. 징계위원회에 계류 중 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2.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3. 직위해제 후 복직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
5.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사람으로 4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<개정 2015.1.13>

**제9조(업무주관)** 포상에 관한 업무는 교원은 교학지원처, 직원은 행정지원처에서 관장하며 표창대상에 등재한다.<개정 2007.09.01>

**제10조(기타사항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(2005. 6. 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2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1. 1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7. 22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